

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50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25. 11. 11.
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약사동 327-9번지 내 「약사다목적체육관」 운영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약사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

나. 추진근거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」 제15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6조(위탁관리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)

다. 위탁의 필요성

- 중구체육회의 생활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구 생활체육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
- 중구체육회 위탁관리 시 강사료 지급예산 절감 및 전문성 있는 강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습 수입 증대 기대

라. 위탁사무 내용

- 약사다목적체육관 시설 전반 관리
- 그 밖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연면적	운영시간	시설현황	위탁기간
약사 다목적 체육관	약사동 327-9	593㎡ (지상2층)	평일08:00~22:00 (주말10:00~20:00) /월요일휴관	프로그램실, 사무실, 탈의실, 화장실 등	위탁일로부터 2년

바. 수탁자 선정 방식: 수의계약(울산광역시 중구체육회)

사. 소요예산: 97,200천원(기간제인건비 68,400, 공공운영비 14,400, 지급수수료 등 11,400)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검토내용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	검토내용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 15조2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도 불구하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 그리고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6조에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,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○ 해당사업은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부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요구에 따라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주민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익적 목적을 지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핵심부분을 위탁하여 안정적 사업 운영 가능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항목	검토내용
3.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접 운영 시 자격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○ 단체 운영 시 인력·자원을 공유하여 효율 증대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탁기관의 인적 체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공서비스 공급 목표, 사업계획 합리성 등 실적관리 보고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측정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·감독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서비스 증대에 이바지함

○ 검토결과

- 해당사업은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, 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약사다목적체육관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전문지도자들의 다양한 현장지도 경험과 체육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에 위탁 운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3. 추진일정

가. 위탁계약 체결 : 2026. 상반기

나. 예산 이체 등 예산변경: 2026. 1회 추경예산 편성시

다. 민간위탁 운영 개시 : 2026. 상반기

4. 참고사항

가.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」 제15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

제15조의2(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체육회 및 울산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,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·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(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)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,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·수익,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 제16조(위탁관리)

제16조(위탁관리)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,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제6조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를 민간위탁(최초위탁, 재위탁, 재계약 포함)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, 위탁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